

의안번호	2220908
의 퇴 인	김은혜 의원
회 답 일	2026.9.18.
추 계 번 호	26E4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 임직원 성과조건부주식 소득세 비과세 및 납부유예 특례
신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6조의6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 비과세 특례)	○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 비과세 특례 신설 －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교부받은 자기주식에서 얻은 이익(주식 교부 당시 시가) － (비과세 특례) 연간 2억원, 누적 5억원까지 비과세 － (적용기한) 2031. 12. 31. 교부받는 분까지 적용
2	안 제16조의7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	○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한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 납부특례 신설 － (납부특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 중 제16조의6에 따른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고 5분의 1씩 향후 5년간 분할납부 가능 － (기타) 소득세 분할납부 중 성과조건부주식을 반환하거나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세액의 미납부액 중 관련 부분 환급 － (적용기한) 2031.12.31. 이전에 교부받는 분까지 적용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6조의6(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 비과세)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6조의7(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벤처기업으로부터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교부받은 자기주식에서 얻은 이익(이하 “교부이익”이라 함)을 연간 2억원, 누적 5억원까지 비과세 하고(안 제16조의6), 비과세분을 제외한 나머지 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향후 5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안 제16조의7)으로,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계약을 말함(「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6의17)
 - 개정안에 따라 분할납부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교부이익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는 5년에 걸쳐 모두 징수되나, 교부이익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세는 감소하게 됨
- 개정안에 따른 세수변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건수 및 체결 임직원 수 현황, 계약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시점 및 규모, 교부 당시의 시가,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임직원의 소득세 과세표준, 성과조건부주식에 따른 소득세 납부세액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 해당 자료의 습득에 어려움이 있어 객관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는 성과조건부주식계약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규모, 교부시점의 시가, 개인별 한계세율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흥철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흥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